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시행 2024. 4. 1.] [조달청훈령 제2198호, 2024. 4. 1., 일부개정]

조달청(공정평가관리팀), 070-4056-6124

제9조(평가위원 자격)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6급 승진·임용 후 5년 이상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지정·공고하는 기관 및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가. 해당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해당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및 조달청장이 별도 지정·공고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마. 해당 직무 관련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바. 조달청장이 별도 지정·공고하는 국가전문자격을 관련법에 따라 취득한 후 해당직무에서 3년 또는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산학중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격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및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직무관련 업무경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직전직장(공무원, 공공기관, 대학교)의 직무관련 업무경험 기간이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부칙 <제2198호, 2024.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